

## 제 13 장 최종규정

### 제 13.1 조 부속서, 부록 및 각주

이 협정의 부속서,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### 제 13.2 조 개정

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. 모든 개정은 양 당사국이 필요한 모든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후,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.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### 제 13.3 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

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한다.

### 제 13.4 조 발효

1. 이 협정의 발효는 각 당사국의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.

2.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그들 각자의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.

### 제13.5조 협정의 검토

1. 제12.2조(공동위원회의 기능)에 따라 적절하게, 이 협정은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의 발효 후 1년 후에는 언제라도, 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협정의 개선 및 개선을 목적으로, 협상을 통해서 검토의 대상이 된다. 검토는 자유화의 심화, 잔존하는 차별의 감소 또는 제거 및 시장 접근의 추가 확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.

2. 이 조에 따라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, 공동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한다.

가.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와 부속기관의 업무

나. 국제 포럼에서의 관련 진전사항, 그리고

다. 적절한 경우, 전문가의 의견

### 제 13.6 조 존속 및 종료

1. 이 협정은 제2항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.

2.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3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그러한 종료는 제2항에 언급된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2020년 12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,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.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, 영어본이 우선한다.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

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